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7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서천호·엄태영·조인철

안철수 · 장동혁 · 박덕흠

이종배 • 신동욱 • 김장겸
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시장·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,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.

그러나 시·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 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 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

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"시장·군수"를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"로, "또는"을 "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다만,"을 "다만, 시·도 가축방역기관과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시장·군수"를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"를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"를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시·도지사,시장·군수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.
- 1. 제1항의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2. 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
- 3.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- 4.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제22조제1항 중 "시장・군수"를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・도지사와

시장·군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제1 항에 따른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·군수가 지급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1조(공수의) ① 시장·군수는 제21조(공수의) 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 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 자치시장 • 도지사 • 특별자치 고 있는 수의사, 동물병원에서 도지사(이하"시 · 도지사"라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 한다) 및 시장·군수-----산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 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과 -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 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 무만 위촉할 수 있다. 시·도 가축방역기관과 -----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6. -----시장・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 지사 및 시장・군수-----

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[이하 "공수의(公獸醫)라 한다]는 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
<신 설>

제22조(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) ① 시장・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 |

-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2 -----시장 · 군수의 지휘 · 감독을 받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 · 도지 사, 시장·군수-----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・군수는 공수 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해당 공수의를 해 촉할 수 있다.
 - 1. 제1항의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2. 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
 - 3.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.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 - 제22조(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)
 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 도지사와 시장・군수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・군

<u>시장(이</u>	<u>하 "시·</u>	도지사'	'라	<u>한</u>
<u>다)은</u>	제1항에	따른	수당	과
여비의	일부를	부담할	수	있
다.				

<u>수가 지급하는</u>-----.